

구미시 재해대책기금운용·관리조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2. 9. .

제출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(대통령령 제17587호 2002. 4. 27)됨에 따라
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 운용·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재해
대책기금의 운용·관리에 효율적으로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기금의 운용·관리

-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
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할 기금액(장기예치기금액)과
당해연도사용기금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·관리토록 신설
(안 제3조)

○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·관리

- 장기예치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·관리토록 신설(안 제4조)

○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·관리

-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
관리
-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
잔액에 포함하여 관리·운용 관리토록 신설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

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·관리조례개정조례안

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·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·관리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
2. 기금의 운용수입
3. 기타 잡수입 등

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시장은 누계잔액(매년 적립된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)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할 기금액(이하 “장기예치기금액”이라 한다)과 당해년도사용기금액(장기예치금액을 제외한 기금액을 말한다)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4조(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·관리) 장기예치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(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)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금융기관이라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제135조 및 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.

제5조(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·관리)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.

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

하여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·정비를 요하는 사업
2.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
3.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
4.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·수문·배수관·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
5. 하수도시설(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)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 관거의 정비사업
6. 수리시설 중 배수장, 방조제, 용수로·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
7.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(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 한다)의 정비사업

제7조(기금의 회계관리) 이 기금의 수입·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회계공무원)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도시건설국장
2. 기금출납원 : 방재담당

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.

- 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·국·소장 또는 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건설과 방재 담당이 된다

제10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기금의 운용계획
- 2.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
- 3. 기금의 결산
- 4. 기타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

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.

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기금의 조성계획
- 2. 기금의 사용계획
- 3. 기금의 운용방법

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

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